

심사보고서

【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】

의안번호
459

2024. 6. 11.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4. 5. 31. / 남양주시장
나. 회부일자: 2024. 5. 31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4. 6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시립어린이집 11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 내용 :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
○ 위탁시설 개요

- 위탁대상 : 시립어린이집 11개소

(재계약) 8개소

연번	어린이집명	수탁체 (원장)	소재지	규모 (㎡)	개원일	정원 (현원)	보육 교직원	위탁기간
1	다산아이편한	주○영	다산중앙로 20번길 7	369	' 19.8.1.	53 (44)	11	' 24.8.1. ~ ' 29.7.31.

연번	어린이집명	수탁체 (원장)	소재지	규모 (㎡)	개원일	정원 (현원)	보육 교직원	위탁기간
2	다산한강그리니	김○란	다산지금로 146번길 117	366	' 19.8.1.	73 (60)	15	' 24.8.1. ~ ' 29.07.31
3	시립진접행복	경기동부 보육교사 교육원 (전○정)	금강로 1530-29	377	' 19.8.1.	50 (48)	11	' 24.8.1. ~ ' 29.7.31.
4	다산퍼스트리버	김○호	다산지금로 146번길 100	334	' 19.9.1.	70 (68)	13	' 24.9.1. ~ ' 29.8.31.
5	시립아이유셀	김○희	화도읍 수레로 1233번길 34	206	' 19.9.1.	34 (34)	12	' 24.9.1. ~ ' 29.8.31.
6	오네뜨	최○영	늘을3로 88-12	117	' 19.9.1.	26 (25)	11	' 24.9.1. ~ ' 29.8.31.
7	다산아이사랑	정○일	다산중앙로 82번길 12	361	' 19.10. 1.	69 (69)	14	' 24.10.1. ~ ' 29.9.30.
8	다산누리봄	이○성	다산중앙로 145번길 38	406	19.11.1.	75 (75)	14	' 24.11.1. ~ ' 29.10.31

(재위탁) 3개소

연번	어린이집명	수탁체 (원장)	소재지	규모 (㎡)	개원일	정원 (현원)	보육 교직원	위탁기간
1	시립남양주	김○정	다산중앙로82번길 106	942	' 22.6.1.	95 (89)	22	' 24.9.1. ~ ' 29.8.31.
2	시립미리내	이○자	별내3로 23	273	' 14.10. 31.	56 (42)	13	' 24.10.31 ~ ' 29.10.30
3	시립호평드림	강○주	늘을1로 107	188	' 14.11. 14.	32 (20)	8	' 24.11.14 ~ ' 29.11.13

- 위탁기간 : 5년 ※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재계약 :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 최종 결정

- 재위탁 :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

○ 재계약 대상 성과평가

어린이집명	점수 (50점)	1. 운영체의 공신력 (10점)	2. 운영체의 운영실적(19점)				3. 운영체의 전문성(16점)			4 운영체 의 재정능력 (5점)
			회계 관리의 적절성 (5점)	만족도 조사 (부모,교사) (10점)	장애 아통합 보육 (3점)	열린 어린이 집 (1점)	평가 등급 (10점)	업무 경력 (5점)	포상 및 공모사업 실적 (1점)	
다산아이편한	48	8	5	10	3	1	10(A)	5	1	5
다산한강그리니	49	10	5	10	3	1	10(A)	5	0	5
시립진접행복	48	10	5	10	3	1	10(A)	5	1	3
다산퍼스트리버	50	10	5	10	3	1	10(A)	5	1	5
시립아이유셀	50	10	5	10	3	1	10(A)	5	1	5
오네뜨	50	10	5	10	3	1	10(A)	5	1	5
다산아이사랑	50	10	5	10	3	1	10(A)	5	1	5
다산누리봄	50	10	5	10	3	1	10(A)	5	1	5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운영재원 :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
- 소요예산 : 7,591,324천원(2024년도 예산 기준)

(단위: 명, 천원)

연번	어린이집명	정원	보육교직원	소요예산 및 산출내역		
				계	인건비 (보육교직원)	운영비 (관리운영비, 보육활동비 등)
계				7,591,324	4,820,838	2,770,486
1	다산아이편한	53	11	618,275	372,949	245,326
2	다산한강그리니	73	15	793,396	501,889	291,507
3	시립진접행복	50	11	664,450	382,304	282,146
4	다산퍼스트리버	70	13	762,670	453,537	309,133
5	시립아이유셀	34	12	622,976	433,568	189,408
6	오네뜨	26	11	471,593	359,765	111,828
7	다산아이사랑	69	14	762,728	459,093	303,635
8	다산누리봄	75	14	802,169	466,387	335,782
9	시립남양주	95	22	1,041,609	676,148	365,461
10	시립미리내	56	13	630,697	400,256	230,441
11	시립호평드림	32	8	420,761	314,942	105,819

○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시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, 법적건전성,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보육사업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 도모
경제적 효율성	○ 운영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등을 적극 활용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평가제 결과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운영비 정산보고,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립어린이집 11개소 중 3개소는 재위탁(공개모집), 8개소는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검토결과 재계약 대상 8개소 중 5개소는 성과평가가 50%만 이뤄진 상태로 제출된바 성과평가가 모두 이뤄진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
- 동의 이후에도 성과평가 결과가 미달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위탁기간과 의회 회기 일정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4. 질의·답변요지 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수정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

의안 번호	459-1
----------	-------

2024. 6. 11.

복지환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계약 대상 8개소중 5개소는 성과평가가 50%만 이뤄진 상태로 제출된바 성과평가가 모두 이뤄진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동의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계약 어린이집 일부 수정동의

(동의안) 재계약 8개소: 다산아이편한 어린이집 외 7개소

(수정안) 재계약 3개소: 다산아이편한, 다산한강그리니, 시립진접행복 어린이집

나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
460

2024. 6. 11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4. 5. 31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5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4. 6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보육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(안 제2조제1호, 제9조제1항, 제18조제2항, 제19조)
 - 영유아 연령 표기 : 6세 미만 → 7세 이하
 -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 : 15명 이내 → 20명 이내
 -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: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
 -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취소
: 조례 제25조 및 제26조 준용 →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3항 준용

-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삭제(안 제7조)
 - 상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나 상위 법령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문 삭제
- 상위 법령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 심의 및 운영 방법 정비 (안 제 23조제4항, 제26조)
 - 시립어린이집 위탁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같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
 -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취소 기준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영유아 연령 정의,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,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 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같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